

제17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2018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

2018. 3. 29. (목) ~ 4. 2. (월)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주최: 해양경찰청, 대한요트협회

주관: 대한요트협회, 경상북도요트협회

후원: 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 대한체육회, (주)진아

대회공고 Notice of Race

대한요트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1호

www.ksaf.org

tel: 02-420-4392,3

fax: 02-420-4391

e-mail: ksaf@sports.or.kr

1 규칙

- 1.1* 이 대회는 2017-2020 세일링경기규칙에 정의된 규칙(RRS)이 적용된다.
- 1.2 대한요트협회 경기규정 및 계측규정,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이 적용된다.
- 1.3* 해당 클래스규칙이 적용된다.
- 1.4 대회공고와 세일링세칙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세일링세칙이 우선한다.

2 광고

- 2.1 보트는 대한요트협회에서 선정하고 제공하는 광고를 표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규칙을 위반하였다면 월드세일링 규정 20.9.2가 적용된다. [DP]

3* 참가 자격 및 신청

- 3.1 이 대회는 2018년 대한요트협회 선수 등록이 완료된 다음 클래스의 보트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종목	클래스	성별	부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딩기	옵티미스트	남	저	고	○			
		여	저	고	○			
	레이저 4.7	남	○			○		
		여	○			○		
	레이저 레이디얼	남			○		○	
		여			○		○	
	레이저	남				○	○	○
	420	남			○			
		여			○			
	470	남					○	○
		여						○
	49er	남						○
원드서핑	테크노 293	남			○			
		여			○			
	RS:One	남				○	○	
		여				○	○	
	RS:X	남				8.5	9.5	○ ○
		여				○		○

- 3.2 참가 자격이 있는 보트는 대회참가신청시스템 <https://app.sports.or.kr/app/sa> 에서 **2018년 3월 21일(수) 까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 선수는 별지#1의 학교장확인서를 이메일

ksaf@sports.or.kr 로 제출하여야 한다.

- 3.3 늦은 참가 신청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인정된다: 2018년 3월 22일(목)부터 3월 25일(일) 까지 패널티 비용 1척당 50,000원을 납부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늦은 참가 신청 기간 이후의 참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3.4 참가 신청 후 클래스(부) 변경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대회의 경기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3개팀 이상 참가 신청한 클래스(부)로만 변경 가능하다.
- 3.5 레이저 4.7 클래스 고등부는 아시안게임 참가 자격인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선수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4 일정

- 4.1* 등록: 2018년 3월 29일(목) 09:00부터 18:00까지
- 4.2 장비 검사 및 대회 계측: 2018년 3월 29일(목) 09:00부터 18:00까지
- 4.3* 경기 날짜:

날짜	클래스	첫 번째 경기의 예고신호 예정 시간	경기 수
3. 30. (금)	ALL	13:55	2
3. 31. (토)	"	10:55	3
4. 1. (일)	"	10:55	3
4. 2. (월)	"	10:55	1

- 4.4 대회의 마지막 날 13:25 이후에는 예고 신호가 없다.

5 계측

- 5.1 각 보트는 첨부#1 계측 규정에 따라 계측을 받아야 하며, 등록 시 보트 및 장비의 유효한 계측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5.2 보트는 경기 중인 동안에 RRS 77과 78을 따라야 한다.

6 세일링세칙

- 6.1 세일링세칙은 등록 시 대회본부에서 배포된다.

7 대회 장소

- 7.1 대회 장소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 7.2 첨부#2는 경기 구역의 위치를 나타낸다.

8 코스

8.1 범주할 코스는 다음과 같다: 사다리꼴 또는 풍상-풍하 코스

9 벌칙 방식

- 9.1 RRS 44.1과 44.2가 적용된다.
- 9.2 딥기 클래스는 RRS 부칙 P, RRS 42에 대한 특별 절차가 적용된다.
- 9.3 윈드서핑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 규칙과 RRS 부칙 B가 적용된다.
- 9.4 49er 클래스는 RRS 44.1과 RRS P2.1을 변경하여 두-바퀴 돌기 벌칙은 한-바퀴 돌기 벌칙으로 대체된다.

10 채점

- 10.1 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다: RRS 부칙A 낮은점수방식
- 10.2 대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경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 10.3 (a) 5경기 미만 완료된 경우, 보트의 대회 성적은 경기 성적의 합계로 한다.
(b) 5경기 이상 완료된 경우, 보트의 대회 성적은 가장 나쁜 성적을 제외한 경기 성적의 합계로 한다.
- 10.4 클래스 별 종합 채점한다. 단, RS:X 클래스는 남·여 세일 면적 차이로 별도 채점한다.

11 지원배

- 11.1 지원배는 소속 팀 또는 시·도 표시 깃발(가로60cm×세로40cm이상) 형태로 게양하거나 엔진 부분에 표시를 붙여야 한다. [DP]

12 정박

- 12.1 보트는 계류장에 있는 동안 지정된 장소에 정박해 있어야 한다. [DP]

13 무선 통신

- 13.1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트는 경기 중에 음성 혹은 데이터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보트가 이용할 수 없는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신하면 안 된다. [DP]

14 시상

- 14.1 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위: 해양경찰청장 상장, 금메달

2위: 해양경찰청장 상장, 은메달

3위: 해양경찰청장 상장, 동메달

- 14.2 3개팀 이하 출전 클래스 부는 시상식에서 시상하지 않고 시상식 후 개별 전달한다.

- 14.3 초등부를 제외한 3개팀 이하 출전 클래스 부는 완료된 경기 수의 2/3 이상 정상적으로 피니시한 선수는 3개팀 이하 출전하였더라도 성적 및 경기 실적을 인정한다.

경기수	3	4	5	6	7	8	9
피니시 인정수	2	3	4	4	5	6	6

15 책임의 배제

- 15.1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참가한다. RRS 4 경기 출전 결정 참고. 대한요트협회는 대회의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6 보험

- 16.1 참가하는 각 보트는 아래와 같은 보험 또는 이와 동등한 유효한 3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굳프렌드 <http://dongbu.ufinsu.com>

17 추가 정보

- 17.1 이 대회는 2018년도 국가대표 선발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이다. 선발 세부기준은 첨부#3을 참고한다.

[첨부#1] 계측 규정

1 일반요건

- 1.1 제17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보트는 해당 클래스 규칙과 이 계측 규정에 따라 계측을 받아야 한다.
- 1.2 대회 참가 보트는 4항의 계측을 위주로 하나 부분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 1.3 계측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일링경기규칙 및 해당 클래스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우선한다.
- 1.4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계측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공식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1.5 대회 참가 보트는 **3월 29일(목) 11:00시까지** 기술위원회에 계측증명서와 계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에서는 공식게시판에 계측 일정을 게시한다. 이 계측 일정에 따라 선수들은 자신이 가져온 배와 장비 용품을 계측 받아야 한다.
- 1.6 계측 때에는 참가 선수가 와서 기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7 모든 헬, 세일과 스파에는 해당 클래스 규칙에 기술된 대로 계측 마크, 밴드, 스티커 라벨 및 버튼을 부착하여야 한다.
- 1.8 모든 메인 세일에는 리콜 번호, 국적 부호(KOR), 세일 번호 및 클래스 표시를 해당 클래스 규격 지침에 맞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1.9 선수는 기술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정 위반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배나 장비들은 재계측 받아야 한다.
- 1.10 모든 배는 자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구력이 없는 배는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11 이 계측 규정에 따라 계측된 결과는 최종이다.

2 계측 장비의 건조

- 2.1 헬과 세일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측을 받아야 한다.

3 보정 중량

- 3.1 헬 이나 스파 또는 장비 용품이 최소 허용 중량에 미달할 경우, 클래스 규칙에 적법하게 보정 중량이 추가되어야 한다.
- 3.2 보정 중량은 기술 위원의 지시에 따라 부착 되어야한다. 모든 보정 중량 부분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경기 기간 동안 이동시키거나 제거 할 수 없다.

4 계측 되어야 할 장비

- 4.1 계측을 받아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선체, 세일, 대거보드, 센터보드, 킬러 및 킬러 익스텐션, 러더, 스파, 구명동의, 예인 로프(길이-7m이상/최대 두께-6mm이상/종류-물기에 약해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것. 단, 윈드서핑의 경우 길이-5m이상/최대 두께-5mm이상)
- 4.2 각 클래스 별 클래스 규칙 및 장비 규칙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개조 및 변조에 대해 계측한다.

5 계측된 장비

- 5.1 계측된 장비라 함은 해당 경기에서 선수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 세트의 장비 전체를 말한다.
- 5.2 계측이 완료된 헬, 스파, 세일과 장비는 경기 수역, 육상 대회장 또는 요트 하버와 경기 수역 사이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6 변경, 수리 및 대체

- 6.1 헬, 세일 또는 장비의 변경, 수리 또는 대체를 원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종료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클래스 담당 계측관을 통해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2 기술위원회는 세일, 스파 또는 장비의 대체 여부를 결정하며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어떠한 장비도 수리, 변경 또는 교체 할 수 없다.

7 재 계측

- 7.1 모든 보트는 대회기간 중 언제든지 재검사 또는 재 계측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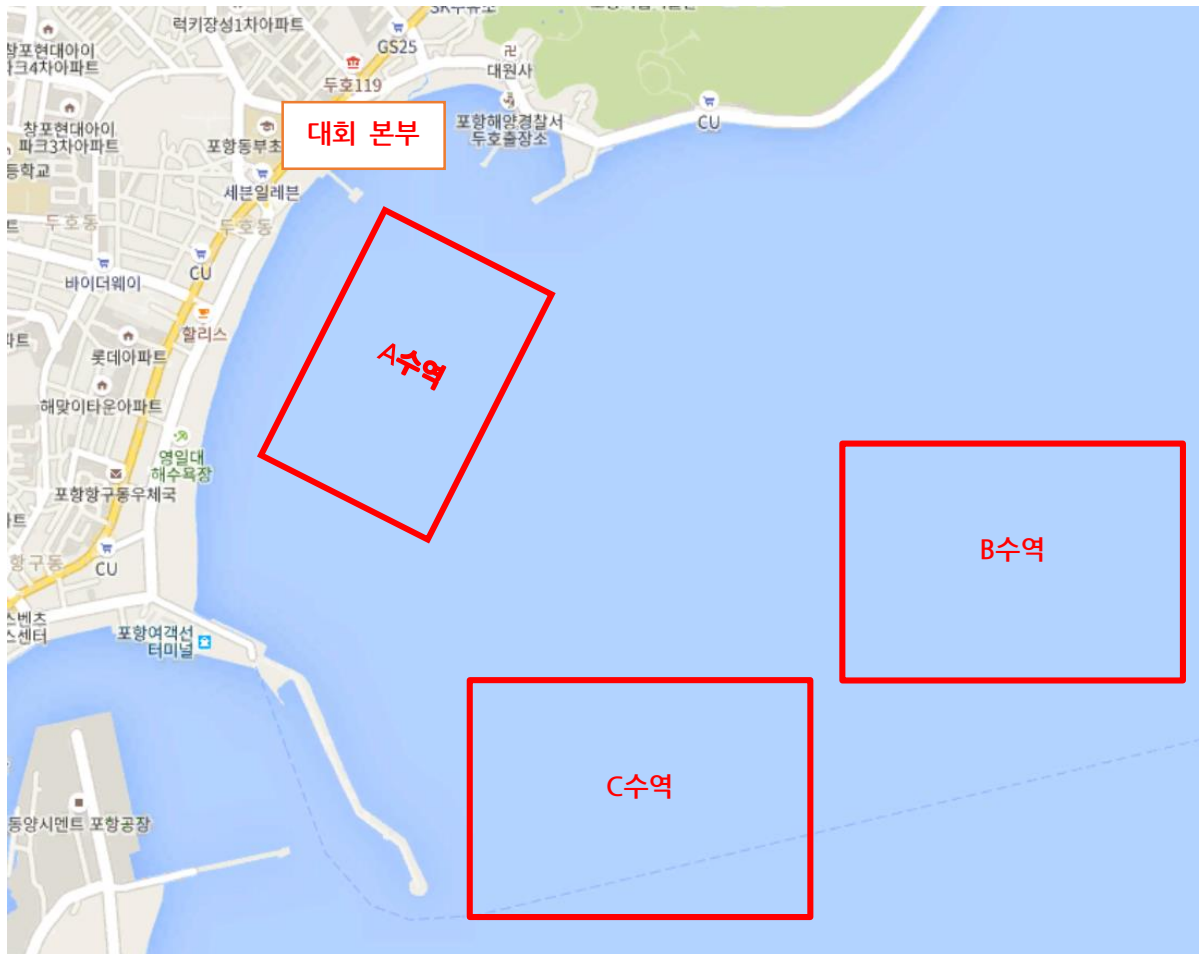
8 계측에 대한 항의

- 8.1 계측에 대한 항의는 항의자가 50,000원의 담보금을 대회 본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된 담보금은 항의자가 패소했을 때는 주최 단체에 귀속되며, 승소 시는 반환한다.

9 계측증명서 발급비용

- 9.1 원본 분실에 의한 재발급: 5,000원 / 신규발급: 30,000원

[첨부#2] 경기 수역 위치



[첨부#3] 국가대표 선발 세부기준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중

제19조(강화 훈련 참가 선수의 선발 세부기준)

- ① 랭킹 포인트를 적용하여 강화 훈련 참가 선수를 선발하는 전국대회는 3경기 이상 경기가 성립되어야 랭킹 포인트로 인정한다.
- ② 랭킹 포인트는 출전 척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1 랭킹 포인트: 15척 출전한 경우 1위(15점)/ 2위(14점)/ ... / 15위(1점)
 - 2 외국인선수가 참가한 경우 외국인 선수의 순위를 제외하지 않는다.
- ③ 국가대표선수가 전국대회 기간 중 협회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경우 파견 직전 랭킹 순위에 해당하는 랭킹 포인트를 받고, 당해 대회 참가 선수의 성적은 순위대로 인정한다. 단, 국제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의 순위보다 앞선 순위는 받지 못한다. 즉, 직전 랭킹이 3위인 선수는 불참대회에서 3위 랭킹 포인트를 받고, 당해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는 3위, 2위를 한 선수는 4위의 랭킹 포인트를 받는다. 하위 등위의 선수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될 경우 그 점수는 0점 처리한다.
- ④ 2인승 이상 종목에서 스키퍼와 크루가 갈라지면 스키퍼의 랭킹에 따르되 최종 랭킹 포인트의 20%에 해당하는 별점을 부과한다. 단, 협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별점이 적은 순으로 결정한다.(버리는 점수 제외)
- ⑥ 합계 점수와 별점이 동점인 경우 동점자가 함께 출전한 가장 최근 선발전에서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만약, 함께 출전한 대회가 없다면 각 선수가 가장 최근에 참가한 선발전대회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 ⑦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위원회에서 추천 선발 할 수 있다.
- ⑧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강화훈련에 무단 불참 및 훈련불성실로 퇴촌 당하면 해당월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다. 단, 부상의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⑨ 부상이나 기타 사유로 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선수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선발 및 훈련에서 제외 할 수 있다.